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76
----------	------

2013년 7월 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3년 7월 1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연찬)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공업용수는 1969년 7월 영등포정수장내에 공업용 수원지를 건설하여 서울의 경제와 산업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산업시설의 이전 및 변동으로 초기 120개 업체이던 공업용수 공급 대상 업체가 2013년 현재 3개 업체로 급감하였고, 1994년 이후 18년 이상 사용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2011년도 생산원가의 58%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사용요금을 생산원가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급수범위도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

하여 시민복지 및 행정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산업시설 이전 및 변동으로 공업용수의 급수능력 대비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급수범위의 확대(안 제2조)
- 공업용수도 공급원가를 생산원가와 연동하고 사용요금을 서울특별시장이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공업용수도 사용요금을 현행 복합요금 구조에서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한 단일요금 체계로 변경(안 제6조제2항)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되는 용어 등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의견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3. 4. 18. ~ 5. 8.)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3) 비용추계 등 자료 : 첨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공업용수 유희 용량 활용을 위하여 급수범위를 확대 하며, 공업용수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복합구조에서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한 단일구조로 변경하고 동시에 2012년 기준 생산원가의 53.8%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공업용수 공급원가에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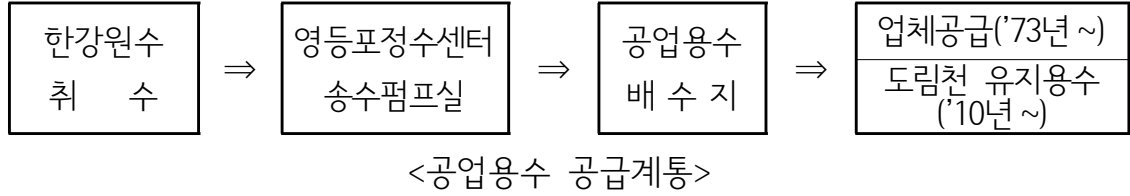
- 동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에 따라 공업용 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과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1969년 3월 24일 제정·시행되었으며, 1969년 7월 영등포정수센터 내에 공업용 수원지를 건설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산업시설의 이전 및 변동으로 초기 120개 업체였던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가 2013년 현재 3개 업체로 급감한 상태임.

1973년 120개	⇒	1995년 23개	⇒	2007년 4개	⇒	2012년 ~ 3개
---------------	---	--------------	---	-------------	---	---------------

<공업용수 공급업체 변동 현황>

- 한편, 공업용수 공급대상 업체 급감에 따른 유희 용량 활용을 위하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서울시와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가 협약을 통해 2010년 6월 1일부터 도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물량 일 3만톤에 대하여 도림천 유지용수에 톤당 72원¹⁾의 공급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납부 고지하는 유지용수 사용료는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가 각각 30%, 동작구가 10% 비율로 분담²⁾하고 있음.

(2) 급수범위 확대 관련(안 제2조제4항)

- 산업시설 이전 및 변동으로 공업용수의 급수능력(42천 m^3 /일) 대비 사용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급수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조제4항 중 “특정지역 내의 산업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를 “특정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제2조(급수의 범위) ① ~ ②

③ 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 내의 산업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장치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협약서」 제8조(유지용수 요금 등)

2)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협약서」 제10조(비용분담)

- 이는 동 조례의 규정없이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협약서」에 의해 2010년 6월부터 도림천에 인접한 상기 자치구에 도림천 유지용수를 공급³⁾하고 있는 바, 현행 산업시설자에 한정하여 공급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업용수의 급수범위를 확대(하천 유지용수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 공업용수 사용료 부과 관련(안 제6조)

- 현행 공업용수 사용료는 기본요금, 계량요금 및 초과요금의 합인 복합요금 구조로 산정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한 단일요금 체계로 변경함으로써 요금 체계의 단순화, 행정의 효율성, 합리적 사용료 부과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공업용수 사용요금 및 사용료 산정방식>

사용 요금 (m ³ 당)	기본요금 20.84원	계량요금 9.444원	초과요금 45.68원
산정방식	사용료 = (기본요금 × 급수신청량) + (계량요금 × 사용량) + (초과요금 × 급수신청량을 초과한 사용량)		

- 그리고 공업용수 사용료는 1994년 이후 동결됨에 따라 2012년말 기준 생산원가⁴⁾의 53.8%로 수도요금 88.9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부산 등 타 광역시⁵⁾와 비교해서도 공급단가가 매우 낮아 공업용수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는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임.

3) 2013년 5월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량 360,224m³

4) 2012년말 기준 생산원가 : 77.7원/m³

5) 2011년 기준 서울 42.41원, 부산시 153원/m³, 대구시 238원/m³, 대전시 160원/m³

- 한편, 동 조례안에서는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 원가에 최근 5년간 물가상승율 평균 수치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산정 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말 기준 사용료는 톤당 80원임.

<조례 개정에 따른 공업용수 사용료 산정('12년말 기준)>

생산원가	+	물가상승률(5년 평균)	=	사 용 료
77.7원/m ³		3.3%(2.3원/m ³)		80.0원/m ³

- 기존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사용료와 비교하면 제일제당은 기존 산정 방식 대비 86.6% 감소하는 반면 수화기업사는 19.4% 증가하고 특히, 롯데제과는 1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공업용수 사용량을 근거로 함께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합산 금액에서 공업용수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 약 5.3%⁶⁾를 고려한다면 공업용수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업체 부담⁷⁾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조례 개정에 따른 월평균 사용료 변동 현황>

회사명	계약량 (m ³ /일)	평균 사용량 (m ³ /월)	현 행		변 경	
			계산식	금액(원)	계산식	금액(원)
수화 기업사	100	1,086	100m ³ ×30일×20.84원 + 1,086m ³ ×9.444원	72,770	1,086×80.0원	86,880
롯데 제과	2,300	60,633	2,300m ³ ×30일×20.84원 + 60,633m ³ ×9.444원	2,010,578	60,633×80.0원	4,850,640
제일 제당	500	530	500m ³ ×30일×20.84원 + 530m ³ ×9.444원	317,600	530×80.0원	42,400

- 또한,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인상되는 사용료(80.0원/m³)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사용료가 가장 낮은 부산시의 52.3% 수준으로 제일제당

6) 롯데제과 2013년 6월 납기 고지서 예 : **38,472천원** = 공업용수 사용료 **2,028천원** + 하수도 사용료 26,791천원 + 물이용부담금 9,653천원

7) 요금 현실화에 따라 롯데제과 등 3개 업체 공업용수 사용료 부담은 **23백만원/년** 증가됨

등 3개 업체와의 관계자 회의('13.4.25)에서도 업체 측에서는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단지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경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줄 것과 공업용수의 지속적인 공급을 희망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기존 계약량 중심의 복합 요금구조를 사용량의 단일 요금 구조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전년도 생산원가에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없이 사용료가 매년 조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도림천 유지용수의 경우 협약에 의거 전년도 생산원가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음).

[참고자료]

「수도법」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 ① 국가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2.1.29]]
-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시행일 2012.1.29]]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특정지역 내의 산업시설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를 “특정지역에”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업용수 사용료) ① 공업용수의 사용료는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공업용수 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용료} = \text{사용량}(m^3) \times \text{전년도 생산원가} \times (1 + \text{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산정방식의 변경에 대하여는 2013년 9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급수의 범위)</p> <p>①~③(생략)</p> <p>④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u>특정지역 내의 산업시설 자에게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장치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제2조(급수의 범위)</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특정지역에</u> ----- ----- 급수설비----- -----.</p>						
<p>제4조(<u>시설분담금</u>)</p> <p>공업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u>시설분담금</u>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4조(<u>원인자부담금</u>)</p> <p>----- ----- <u>원인자부담금</u>----- -----.</p>						
<p>제6조(공업용수 사용료)</p> <p>① 공업용수 <u>사용료의 요율</u>은 별표 2와 같다.</p> <p>② 공업용수 사용료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u>사용료 = (기본요율 × 급수신청량) + (계량요율 × 사용량) + (초과요율 × 급수신청량을 초과한 사용량)</u></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u><신 설></u></p>	<p>제6조(공업용수 사용료)</p> <p>① ----- <u>사용료는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u></p> <p>② ----- ----- <u>사용료 = 사용량(m³) × 전년도 생산원가 × (1 + 물가상승률)</u></p> <p>③ <u>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u></p>						
<p><u><별표 제2호> 공업용수 사용 요율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기 본 요 금</td> <td style="padding: 2px;">계 량 요 금</td> <td style="padding: 2px;">초 과 요 금</td> </tr> <tr> <td style="padding: 2px;">m³당 20.84원</td> <td style="padding: 2px;">m³당 9.444원</td> <td style="padding: 2px;">m³당 45.68원</td> </tr> </table>	기 본 요 금	계 량 요 금	초 과 요 금	m³당 20.84원	m³당 9.444원	m³당 45.68원	<p><u><삭 제></u></p>
기 본 요 금	계 량 요 금	초 과 요 금					
m³당 20.84원	m³당 9.444원	m³당 45.68원					